

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區稅課稅  
免除에關한條例(案)審査報告書

1992년9월21일  
總務財務委員會

1. 審査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8월29일  
麻浦區廳長
-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9일
- 다. 상정일자 : 第11回臨時會 第2次委員會  
( '92.9.21 )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최영명 )

가. 제안이유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社會福祉事業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

나. 主要骨子

- 民法 第32條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사업용에 이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함.

3. 專門委員檢討報告의 要指

( 專門委員 : 김현기 )

本 條例는 民法 第32條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의 규정에 의거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업에 사용되는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지방세 즉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면제해 주기 위한 조례로서 국민의 의료시혜 증진등 사회복지차원의 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됨.

그리고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요지(운동현위원)

현재 마포구에는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이 없으니까 지금 제정할 이유가 없고, 필요시 제정해야 하지 않는가?

○답변요지(세무1과장 최영명)

전국적으로 공통 제정사항이고, 발전적으로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제정이 바람직함.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 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團體醫療業에對한  
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제출년월일 : 1992년8월29일  
제 출 자 : 麻浦區廳長

1. 제안이유

民法 第32條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 수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구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事項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민법 제32조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종교단체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제4호 또는 제31조에 의하여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사업용에 이용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
-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자는 신청에 의하도록 하고 구청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 수 있도록 함.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토록 함

3. 관련법규

○지방세법 제7조(공익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

①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세법 제9조(과세면제등을 위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4. 내무부장관 허가 및 서울특별시장 준칙 시달

○지방세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구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준칙 시달로 내무부 장관허가(근거: 내무부 세제22670-206호. 92.7.8자) 서울특별시장 준칙(안)시달(근거: 세정22670-728호. 92.8.3자)

5. 예산사항 별도 조치 필요없음

서울特別市麻浦區宗教단체醫療業에對한 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하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또는 제31조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特別市麻浦區社會教育施設에對한區稅課稅免除에關한條例中改正條例(案)審査報告書

1992년 9월21일  
總務財務委員會

1. 審査經過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1992년8월29일  
麻浦區廳長

나. 회부일자 : 1992년 9월9일

다. 상정일자 : 제11회임시회 제2차위원회 ('92.9.21)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세무1과장 최영명)

가. 제안이유

圖書館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된 사립공공도서관은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교육 시설임에도 세계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여 과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본조례 제2조에 6호를 신설

6. 도서관 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

3. 전문위원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현기)

본 조례는 도서관진흥법 적용을 받는 사립도서관의 건전한 육성으로 사회 각 분야에 지식과 정보의 제공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도록, 구세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면제하기 위한 조치로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됨.

그리고 현재 마포구 관내에는 해당도서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됨.